

서울특별시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 전화 (02)739-7146 / 전송 734-5243

문서번호 지도11060 - 163

시행일자 '95.2. 15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 취급 | 시 장 | |
|-------|-----|--|
| 보존 | 준영구 | |
| 소방본부장 | 전결 | 1 |
| 지도과장 | h | 법무 담당관 실사필 소방행정과장 1995. 2. 15. 방호과장 1995. 2. 15. |
| 예방계장 | h | 기획계장 h |
| 기안 | 강선행 | 협조 |

제목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내무부 '95.2.7 발표)
- 내무부 예방13801-47('95.2.9)호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 개정안 시달"
-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내지 제22조 "입법예고"

2. 소방행정규제완화추진계획의 발표에 따라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시보와 서울시민신문에 게재하여 입법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조례 공고(안)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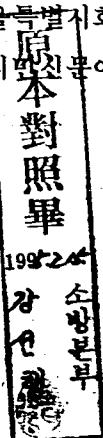
(제 2 안)

수신 : 공보관

제목 : 시보 및 시민신문 게재의뢰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문을 별첨과 같이 시보와 서울시민신문에 게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4부 끝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 호

| | |
|------|---------------------------|
| 시기 | 1995. 2. 1. ~ 1995. 2. 1. |
| 담당자 | 환경부서장 |
| 문서번호 | 서부-1995-1 |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소방행정규제 내용중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 내용을 개선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소량위험물(경유 200리터이상 1000리터미만)의 취급신고와 용도폐지신고 의무 폐지
- 나. 농예·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저장소(지정수량10배미만의 경우에 한함)의 신고와 용도폐지신고 의무 폐지
-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신고와 용도폐지신고 의무 폐지
- 라. 가 내지 다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 다만, 소량위험물등의 저장·취급·안전관리기준 및 기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은 존속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나 조례와 관련한 모든 참고사항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문의 전화번호 : 739-7146(소방본부 지도과 예방계)

1995. 2. 1.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134

133